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내 LED를 설치함에 따라 LED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여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: 부대시설 사용료에 LED시설 사용료 규정 신설(안 별표 2)

구분	기준	사용료		비 고
		기본료	추가사용료	
LED시설	1회/1일	100,000원	전기·조명(4시간) 25,000원	시간초과시 추가사용료의 20%를 시간마다 가산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(제6조 관련)

1. 복지관 강당

(단위 : 원)

기준	사용일별	사용료	냉난방료 (사용시)	비 고
1회 (2시간)	평일	20,000	10,000	시간 초과시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20%를 시간마다 가산
	토·일, 공휴일	24,000	12,000	

2. 실내 체육관

(단위 : 원)

구분	사용일별	대상별	사용료	냉난방료 (사용시)	비 고
체 육 관	평일 주간 (09시 ~ 18시)	장애인	50,000	15,000	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,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
		비장애인	100,000	30,000	
	평일 주간외 및 토·일, 공휴일	장애인	60,000	18,000	
		비장애인	120,000	36,000	
식 당	평일 주간 (09시 ~ 18시)	장애인	15,000	5,000	시간 초과시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20%를 시간마다 가산
		비장애인	30,000	10,000	
	평일 주간외 및 토·일, 공휴일	장애인	18,000	6,000	
		비장애인	36,000	12,000	

3. 체력단련실

(단위 : 원)

구분	기준	사용료	비고
장애인	1개월	무료	동반 보호자는 비장애인 사용료의 50%를 감면
비 장 애 인	어린이	1개월 20,000	만7세 ~ 만12세(만6세 이하는 무료)
	청소년	1개월 25,000	만13세 ~ 만18세
	성 인	1개월 30,000	만19세 이상(단, 만65세 이상은 50%를 감면)

4. 부대시설

구분	기준	사용료		비 고
		기본료	추가사용료	
음향시설	1회/1일	20,000원	마이크 1개당 5,000원	사용한 경우에 한함
LED시설	1회/1일	100,000원	전기·조명(4시간) 25,000원	시간초과시 추가사용료의 20%를 시간마다 가산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, ③ 생략

소 관 부 서		노인장애인과
입 안 자	과 장	황 은 채
	담 당	박 용 자
	담 당 자	신 미 현 (480-5172)